

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 (제37조제1항 관련)

1. 양의 표시

- 가. 양의 표시는 전면 또는 그 외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.
- 나. 양의 표시는 상품 내용물의 성질·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.
 - 1) 액체 또는 점성을 가진 액상제품에 대해서는 부피단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, 질량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.
 - 2) 반고체, 고체, 가스, 액화가스 상품은 질량단위로 표시한다.
 - 3) 에어로졸 형태의 상품은 질량 또는 부피 단위로 표시한다.
 - 4) 개수 상품은 정수로 표시하되, 부피 또는 질량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.
 - 5) 액체매질 내에 존재하는 고체상품은 고품량을 질량으로 추가 표시한다.
- 다. 양이 개별판매를 목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두 개 또는 이상의 개별 포장들로 구성된 상품의 경우 그 양은 겉포장에 전체 개별포장의 총량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.
- 라. 양을 표시할 때 숫자와 문자의 높이는 최소 2 mm 이상이어야 한다.

2. 단위 표시

- 가. 단위와 숫자는 직립체를 사용하고 단위와 숫자를 구별하기 위해 띄워야 한다.
- 나. 단위는 측정형태와 내용량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. 측정형태별 내용량의 크기에 따른 표시단위는 다음 표와 같다.

측정형태	내용량	표시단위
부피	내용량 < 1 000 mL	mL (ml) 또는 cL (cl)
	1 000 mL ≤ 내용량	L (l)
질량	내용량 < 1 g	mg
	1 g ≤ 내용량 < 1 000 g	g
	1 000 g ≤ 내용량	kg
길이	내용량 < 1 mm	µm 또는 mm
	1 mm ≤ 내용량 < 100 cm	mm 또는 cm
	100 cm ≤ 내용량	m
면적	내용량 < 100 cm ²	mm ² 또는 cm ²
	100 cm ² ≤ 내용량 < 1 m ²	cm ²
	1 m ² ≤ 내용량	m ²